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22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 한정애·송옥주·문진석

조인철 • 이광희 • 이병진

이학영 · 조정식 · 이재강

이언주 • 박홍근 • 이원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'동물외교'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.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 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.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 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 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,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경우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	제4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
민의 책무) ① ~ ⑦ (생 략)	민의 책무) ① ~ ⑦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⑧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
	하여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
	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통령선
	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
	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
	보호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
	<u>야 한다.</u>